

# [사]공공도서관협의회 연회비 납부에 관한 법적 근거 검토

2024. 11. 5.

## □ 현 법적 근거 ※붙임 참고

- (공공도서관협의회 정관) 제3조(목적), 제9조(회원의 의무)
- (민법) 제32조(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)
- (도서관법) 제18조(도서관 관련 단체의 설립)
- (지방재정법) 제17조(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)

- 공공도서관협의회는 민법 제32조 및 도서관법 제18조에 근거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, 임의 협의체가 아님.
-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17조 1항에 해당하는 지자체의 공금으로 연회비 지출이 가능한 법령 근거가 있는 협의체임.

## □ 지방재정법 제17조(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)

: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·단체에 기부·보조,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. 다만,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.

### 1.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

## □ 민법 제32조(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)

: 학술, 종교, 자선, 기예,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**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.**

## □ 도서관법 제18조(도서관 관련 단체의 설립)

: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도서관 상호 간의 도서관자료교환, 업무협력과 운영·관리에 관한 연구, 관련 국제단체와의 상호협력, 도서관서비스 진흥 및 도서관의 발전, 직원의 자질향상과 공동이익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**도서관 관련 단체의 법인 설립을 허가**할 수 있다.

②**국가 및 지방자치단체**는 제1항에 따른 관련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.

법령 및 규정	조항	세부 내용
도서관법	제18조	<p><b>제18조(도서관 관련 단체의 설립)</b></p> <p>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도서관 상호 간의 도서관자료교환, 업무협력과 운영·관리에 관한 연구, 관련 국제단체와의 상호협력, 도서관서비스 진흥 및 도서관의 발전, 직원의 자질향상과 공동이익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<b>도서관 관련 단체의 법인 설립을 허가</b>할 수 있다.                      &lt;개정 2009. 3. 25., 2016. 2. 3., 2021. 12. 7.&gt;</p> <p>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관련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. &lt;개정 2009. 3. 25., 2021. 12. 7.&gt;</p> <p>③ 제1항에 따른 관련 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「민법」 중 비영리법인의 규정을 준용한다.</p>
민법	제32조	<p><b>제32조(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)</b> 학술, 종교, 자선, 기예,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.</p>
지방재정법	제17조	<p><b>제17조(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)</b></p> <p>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<b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</b> 개인 또는 법인·단체에 기부·보조,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. 다만,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. &lt;개정 2014. 5. 28.&gt;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</li> <li>2. 국고 보조 자원(財源)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</li> <li>3.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</li> <li>4.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</li> </ol>
공공도서관협의회 정관	제3조	<p><b>제3조(목적)</b> 본 협의회는 도서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도서관 상호간의 업무협력과 운영·관리에 관한 연구, 도서관 서비스 진흥 및 도서관의 발전, 직원의 자질향상과 공동이익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도서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
공공도서관협의회 정관	제9조	<p><b>제9조(회원의 의무)</b> ①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3. 회비(당해연도 2월까지) 및 제 부담금의 납부</li> </ol>